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4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2023. 3. 1.자 조직개편을 위한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중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
- 나. 교육정책국 분장사무 중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 제8조)
- 다. 교육행정국 분장사무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라.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절, 제21조~제23조)
- 마. 신청사 건립 전담기구의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함(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 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2. 9. 21. ~ 10. 10.)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통보 확인서(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검토 의견서(별첨 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0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5호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제9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의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획조정실) (생략)	제7조(기획조정실)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7.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10. <u>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 <u>에 관한 사항</u>	10. <u>삭제</u>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u>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u>	14. <u>삭제</u>
제8조(교육정책국) (생략)	제8조(교육정책국)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화 <u>및 행정정보화</u> 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행정국) (생략)	제9조(교육행정국)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u>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학교보건진흥원</u>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보건안전진흥원</u>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 ----- 서울특별시교육청 <u>학교보건진흥원</u> (이하 “ <u>학교보건진흥원</u> ” 이라 한다)을 둔다.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 ----- 서울특별시교육청 <u>보건안전진흥원</u> (이하 “ <u>보건안전진흥원</u> ” 이라 한다)을 둔다.
② <u>학교보건진흥원</u> 은 서울특별시-----.	② <u>보건안전진흥원</u> 은 서울특별시-----.
제22조(원장) <u>학교보건진흥원</u> 에 원장을 두고 -----.	제22조(원장) <u>보건안전진흥원</u> 에 원장을 두고 -----.
제23조(업무) <u>학교보건진흥원</u>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3조(업무) <u>보건안전진흥원</u>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부서 신설, 재편, 재배치 등에 따른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행정6급 한보석 (02-3999-356)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윤OO 김OO 김OO 임OO 남OO 김OO</p>	<p>○ 제21조~23조까지의 “서울특별시 교육청학생보건건강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으로 명칭 변경</p> <p>- 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과 교직원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에 기관명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 보건, 환경, 급식, 안전을 포함 하는 용어 사용이 합리적임 - 또한, 안전이 강화되는 추세이 므로 ‘보건안전진흥원’을 제안함</p>	<p>○ 반영</p> <p>- 기관 명칭은 그 기능을 포괄적 으로 담아내면서도 대시민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 학생·교직원의 건강 증진이라는 학교보건진흥원 설립 취지와 안전 기능 강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 제출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반영 하고자 함</p> <p>▶ 명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p>
<p>임OO</p>	<p>○ 제21조~23조까지의 “서울특별시 교육청학생보건건강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건강증진 본부”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증진본부” 명칭 변경</p> <p>- 주요 업무를 포괄하고, 기존 진흥원보다 강화된 관리기능에 초점을 두어 본부로 변경</p>	
<p>조OO</p>	<p>○ 제21조~23조까지의 “서울특별시 교육청학생보건건강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지원 본부”로 명칭 변경</p> <p>- 보건의 보건진흥원 주요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용어이며, - 기관의 위상이 학교보건 지원 중심에 있음에 본부로 변경</p>	

【별첨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서울교육016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한보석	전화번호	02-3999-356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박정원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09월 21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10월 03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03일</p>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교육행정6급)	성명	한보석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공율,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 개정 내용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항 없음 의견임.				원안동의 (권고사항 없음)	

【별첨 6】

관계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